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28

발의연월일: 2020. 11. 13.

발 의 자: 구자근·강기윤·김영식

정진석 • 박성민 • 이달곤

김용만 • 윤두현 • 최춘식

김예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선로 및 전력시설물, 철로 등 철도시설물, 수도관 등 중요 사회기반 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함)을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할 때에는 소유권 또는 지상권·구분지상권으로 그 권리를 취득하되, 토지소유주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을 받아 그 권리를 등기신청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도시철도법」, 「수도법」 등 관련 법률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한편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으로서 승인을 받아 송전철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수용·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토지 수용·사용재결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송전시설의 권원을 등기부에 등재할 수 없어 적법한 권원 변동사항이 등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승계인, 토지소유권 관련자들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권원을 등기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토지소유주 등과의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4(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 및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의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등기신청의 적용례) 제6조의4제2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상권 또는 구분 지상권을 등기 신청하는 경우(이 법 시행일 전에 이 법에 따라 지상 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관한 수용·사용 재결을 완료하였으나 등기 를 경료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제6조의4(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원개발사업 자는 다른 자의 토지 및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 립된 경우에는 지상권 또는 구 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이 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과 토
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사용에 관한 지상권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 도 불구하고 송전선로 [발전소상호 간, 변전소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